THE SHARP
송도센터니얼

송도국제도시 F19-1블록 더샵 송도센터니얼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안내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송도국제도시 F19-1블록 더샵 송도센터니얼은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www.더샵송도센터니얼.kr)합니다.
- 본 사이버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www.더샵송도센터니얼.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서류접수 기간 및 정당계약 기간 등 일부 지정일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사가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 합니다.
  -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견본주택 입장 전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비 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발판, 손 소독제, 비 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1833-3342)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의 유니트 관람은 당첨자(예비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내에만 관람이 가능하오니 이점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당첨자 사전서류 접수 일정

구분	당첨자 사전서류접수 일정				
	2020.06.11.(목)	2020.06.12.(금)	2020.06.13.(토)	2020.06.14.(일)	2020.06.15.(월)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10:00 ~ 10:30	7	7	7	7	7
10:30 ~ 11:00	7	7	7	7	7
11:00 ~ 11:30	7	7	7	7	7
11:30 ~ 12:00	7	7	7	7	7
13:00 ~ 13:30	7	7	7	7	7
13:30 ~ 14:00	7	7	7	7	7
14:00 ~ 14:30	7	7	7	7	
14:30 ~ 15:00	7	7	7	7	
15:00 ~ 15:30	7	7	7	7	
15:30 ~ 16:00	7	7	7	7	
16:00 ~ 16:30	6	6	6	6	
16:30 ~ 17:00	6	6	6	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파트 당첨자 사전서류접수를 당사홈페이지(www.더샵송도센터니얼.kr)에서 선착순 예약 받을 예정이오니 예약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 합니다. [예약 가능 일정은 당첨자 별도 안내 예정]

2. 아파트 정당 계약 일정

구분	당첨자 정당계약 일정				
	2020.06.22.(월)	2020.06.23.(화)	2020.06.24.(수)	2020.06.25.(목)	2020.06.26.(금)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예약가능 인원
10:00 ~ 10:30	7	7	7	7	7
10:30 ~ 11:00	7	7	7	7	7
11:00 ~ 11:30	7	7	7	7	7
11:30 ~ 12:00	7	7	7	7	7
13:00 ~ 13:30	7	7	7	7	7
13:30 ~ 14:00	7	7	7	7	7
14:00 ~ 14:30	7	7	7	7	
14:30 ~ 15:00	7	7	7	7	
15:00 ~ 15:30	7	7	7	7	
15:30 ~ 16:00	7	7	7	7	
16:00 ~ 16:30	6	6	6	6	
16:30 ~ 17:00	6	6	6	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파트 당첨자 사전서류접수를 당사홈페이지(www.더샵송도센터니얼.kr)에서 선착순 예약 받을 예정이오니 예약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 합니다. [예약 가능 일정은 당첨자 별도 안내 예정]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5.21.(목)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Home'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본 아파트에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0.06.10)로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05.21.(목)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됩니다. 단, 동일 청약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접수결과 미달인 경우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 자에게 공급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부 ,모 , 장인, 장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4항 및 제53조 참조)
  - ※ 분양권 등에 관한 적용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따라 "소형 · 저가주택 등" 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 저가주택 등"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다목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 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1순위 청약 시 과거 당첨자발표일이 2018.05.21.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추첨제로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가점제 제한 대상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 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 · 부금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변경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 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 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 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 분양안내 홈페이지(www.더샵송도센터니얼.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확인(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22조 3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이고, 아시아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분양대금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시공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주)포스코건설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주)아시아신탁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송도국제도시개발(유)와 수탁자 아시아신탁(주)이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종료(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송도국제도시개발(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사업경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甲" 및 "丙"은 「본건 시설의 준공 후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분양계약의 해제사유로 규정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 /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수탁사	위탁사	
상호	아시아신탁(주)	송도국제도시개발(유)	㈜포스코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상가 에이동 3층 (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법인 등록번호	110111-3543801	110114-0037603	174611-0002979

▣ 분양안내 홈페이지 : www.더샵송도센터니얼.kr

▣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 (송도동 37-2) ▣ 분양문의 : ☎1833-334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1833-3342

수탁사 아시아신탁

위탁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시공사 posco 포스코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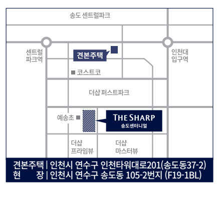

견본주택 |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01(송도동37-2)
현 장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05-2번지 (F19-1BL)